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20호

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2019년도 상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「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일부 개정에 의하여 국·과·사업소의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별 의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
-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명문 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 조정(안 제3조)
- 나.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

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